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90호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휴관일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에게 공평한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2)

나.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함(안 제8조제1항제2호라목)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0
----------	-----

발의연월일 : 2023. 8. 29.

발 의 의 원 : 이종화 · 김경희 · 김남수 · 김수혜 · 문순규
박선애 · 백승규 · 서명일 · 성보빈 · 심영석
오은옥 · 이우완 · 이원주 · 전홍표 · 정순욱
한은정 의원(16명)

1. 제안이유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휴관일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에게 공평한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2)

나.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함(안 제8조제1항제2호라목)

3. 참고사항

가. 신 · 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수영장 등의 휴관일) 복지관의 시설 중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는 수영장 등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수요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제8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감면대상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p> <p>가. ~ 다. (생 략)</p> <p>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장애인의 가족 및 보호자</p> <p>마. ~ 아. (생 략)</p> <p>2의2.·3. (생 략)</p> <p>② (생 략)</p>	<p>제6조의2(수영장 등의 휴관일) 복지관의 시설 중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는 수영장 등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매주 수요일</p> <p>2. 설날 및 추석 연휴</p> <p>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p> <p>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p> <p>마. ~ 아. (현행과 같음)</p> <p>2의2.·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관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삭제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교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창원시 진해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에 둔다.

제3조(시설의 설치) 복지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관
2. 청소년수련관
3. 노동자복지관
4. 여성회관
5.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한 시설

제4조(사업내용) 복지관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2.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각종 교육연수 및 상담 등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노동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교양·교육사업, 생활편익사업, 체육·문화사업 등 노동자 복지를 위한 지원사업
4. 여성의 기술·기능교육, 생활전문교육, 테마교육, 전통 다도, 예절교육, 간병인, 산모조리인 교육, 부업알선 창구운영 등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제5조(위탁운영)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삭제<2015.11.13>

④ 수탁자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자문과 여론 수렴을 위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복지시설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6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라 복지관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등의 징수) 시설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르며,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대상

가. 국가 또는 창원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감면대상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대상자,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소자

다. 「아동복지법」 제45조, 제48조 및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장애인의 가족 및 보호자

마.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및 청소년단체 행사일 경우

바.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간 이용 회원 중 임신한 사람

사.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의2. 감면대상: 사용료의 30퍼센트 감면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3. 감면대상 :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가.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10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는 시설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보건복지부 훈령 및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사용료 (제7조 관련)

1. 수영장

구 분			금 액
월회원	일반인	강 습	60,000원
		자 유	55,000원
	노인, 청소년, 어린이	강 습	40,000원
		자 유	35,000원
1일회원	일반인	개 인	3,500원
	청소년	개 인	3,000원
		단체(20명 이상)	2,500원
	노인, 어린이	개 인	2,500원
		단체(20명 이상)	2,000원

2. 사우나실

구 분		금 액
사우나실	일반인	1회 4,000원
	청소년	1회 3,000원

3. 체육시설

시 설 명	기 준		금 액	
헬 스	일반인	1명1회(1시간)	3,000원	
		월회원	40,000원	
	노인, 청소년	1명1회(1시간)	2,500원	
		월회원	25,000원	
스 퀴 시	일반인	1명1회(1시간)	4,000원	
		월회원	강습	60,000원
			자유	40,000원
	청소년	1명1회	3,000원	
		월회원	강습	45,000원
			자유	25,000원

※ 노인요금 적용자는 타 감면 혜택 배제